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서울가정법원

판 결

사 건 2021드단127401 혼인의 무효

원 고 배원근 (460713-2055713)

주소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9, 3208동 1303호(풍산동, 신안인스빌)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16, 3층 (서초동, 태림빌딩)

등록기준지 안동시 풍천면 기산리 548번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리내

담당변호사 오창훈

피 고 박승용 (720922-1047415)

주소 서울 마포구 서강로1길 44, 201호(창전동, 명성빌라)

송달장소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3, 2층 포레스트법무사 (동교동,
효성홍익인간오피스텔)

(송달영수인 최대일)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망 김선자 (681002-2055714, 등록기준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22길 25) 사이에
2021. 5. 2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김선자(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2015년경부터 망인과 동거하며 함께 일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2년경 피고와 처음 만날 무렵부터 지병인 간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 후 음주를 절제하지 아니하여 간경화와 간암으로 지병이 악화되었으며, 2018. 12.경부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 1)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간세포암종,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신 증후군, 간경화증을 동반한 식도정맥류, 직장 정맥류, 간성 뇌병증'으로 진단받았고, 2021. 3. 2.부터 2021. 6. 7. '간암, 간경변'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실과 응급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입원 기간 동안 망인을 간병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수술동의서 등에 보호자(배우자)로 서명하고 병원에서 실시하는 간이식 관련 교육 및 상담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라. 망인은 2021. 5. 18.경부터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혈압이 유지되지 않고, 자주 저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변트 빔지을 바코드 집니다.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비코드

나트름혈증, 간성혼수, 섬망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망인의 주치의인 이 사건 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박준용은 가족들에게 망인의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

마. 망인은 2021. 5. 24.경 망인과 피고가 혼인한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고, 피고는 2021. 5. 24. 위 혼인신고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고 한다).

바. 망인은 2021. 5. 29. 원고에게 '혼인 무효, 김선자, 5월 29日'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한 메모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간암으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이루어졌거나 망인이 혼인의 합의를 할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제815조 제1호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7 판결,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혼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변조 영자를 바코드입니다.



음성출력용바코드

인의 합의를 함에 있어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한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혼인은 부부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이고, 가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행위로서, 한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결정사항인 점, 미성년자라도 만 18세에 다다르면 혼인을 할 수 있으나 혼인을 하는 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민법 제807조, 제808조 제1항), 생존한 법률혼 배우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선순위의 단독 내지 공동상속인이므로 혼인은 사후 개시될 상속 등 재산상 법률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의 합의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이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18. 5. 18.경부터 종종 간성혼수 증세를 보였으나 간성혼수는 감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이상에서부터 깊은 혼수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가 매우 다양하고 망인이 깊은 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섬망으로 인한 의식의 변화와 인지기능 장애는 일시적인 것인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혼인신고서에 직접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 이 법정에서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피고가 잠을 못 자게 너무 괴롭혀서 혼인신고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조 발송용 바코드입니다.



음성출력용바코드

의 위 진술과 망인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메모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혼인신고와 그 의미 및 결과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이 피고의 강박에 의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혼인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이러한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망인이 간성혼수나 섬망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미림

윤 미 림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본입니다.

2022. 12. 22.

서울가정법원

법원주사 김재용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